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1. 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함.

2. 주요내용

[안건1] 금오공대 구)캠퍼스 부지매입

1) 제안설명

금오공대 구)캠퍼스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비즈니스지원센터, 3D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기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취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자산】

- 토 지 : 89,398㎡(신평동188번지 외 15필지)
- 건 물 : 54,497㎡(본관 외 17동)
- 기 타 : 200점(공작물 161점, 수목 39종)
- 기준가격 : 약 67,016,672천원(假 감정)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안건2] 4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1) 제안설명

구미국가산업제4단지 내에 기 투자중인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의 증액투자에 따라 2B 1-3L의 11,855㎡가 경상북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으로 지정·고시되어 이를 매입함으로써 글로벌외투기업의 증액투자를 통하여 부품소재 진흥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토 지 : 5,927.5㎡(전체면적 11,855㎡중 50%)
- 기준가격 : 878,633천원(총금액 1,757,266천원 중 50%)
※ 전체면적 11,855㎡중 50%인 5,927.5㎡는 경상북도에서 매입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안건3] 장천초등 오로분교 부지매입

1) 제안설명

1993. 3. 1일부로 폐교된 장천초등 오로분교에 대하여 자연과 농촌을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도농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주민공동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토 지 : 8,361m²(장천면 오로리 824 번지 외 2필지)
- 건 물 : 697m²(학교 외 3동)
- 기 타 : 96점(공작물 5점, 수목 91종)
- 기준가격 : 292,836천원(감정가격)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안건4] 구미원예농단 토지매각처분 취소 결정

1) 제안설명

구미첨단원예농단조성 2단계사업의 일환으로 구미시와 (유)구미

원예농단 간에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매매대금 미납
으로 토지매각을 해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토지매각 처분 해제】

- 토 지 : 127,687m²(옥성면 구봉리 746-64번지 외 63필지)
- 기준가격 : 약 3,344,201천원(매각가격)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2011년도 관리계획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 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158,880.5	68,188,141				
취득	소계		143,895	67,016,672				
	토지	신평동188 외 15필지	89,398	50,102,568	2011년 상반기	취득	기획재정부	가,감정가
	건물	신평동188 외 15필지	54,497	16,316,014	2011년 상반기	취득	기획재정부	가,감정가
	기타 (수목등)	신평동188 외 15필지		598,090	2011년 상반기	취득	기획재정부	대장가격
	소 계		5,927.5	878,633				
	토지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2B 1-3L	5,927.5	878,633	2011년 상반기	취득	한국수자원공사	분양가
	소 계		9,058	292,836				
	토지	장천면 오로리 824외 2필지	8,361	238,622	2011년 상반기	취득	구미교육청	감정가
	건물	장천면 오로리 824외 2필지	697	46,134	2011년 상반기	취득	구미교육청	감정가
	기타 (수목등)	장천면 오로리 824외2필지		8,080	2011년 상반기	취득	구미교육청	감정가
계			127,687	3,344,201				
처분	토지	옥성면 구봉리 746-64외 63필지	127,687	3,344,201	2010년 상반기	매각 해제	구미시	매각가격

2011년도 공유재산 취득재산 조서

■ 토 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재산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0필지		103,686.5	51,219,823				
1	공단동111-6	학교용지	2,880	1,728,000	2011년 상반기	매입	기획재정부	假 감정
2	신평동168-41	학교용지	222	47,064				
3	신평동178-1	학교용지	91	19,292				
4	신평동178-3	학교용지	1,457	308,884				
5	신평동188	학교용지	76,172	45,703,200				
6	신평동199	학교용지	3,782	801,784				
7	신평동201	학교용지	83	17,596				
8	신평동202-1	학교용지	265	56,180				
9	신평동205	학교용지	1,762	373,544				
10	신평동473-24	학교용지	43	9,116				
11	신평동473-25	학교용지	172	36,464				
12	신평동479-3	학교용지	75	15,900				
13	신평동479-4	학교용지	138	29,256				
14	신평동산21-2	학교용지	893	535,800				
15	신평동산29-2	학교용지	1,024	217,088				
16	신평동산50	학교용지	339	203,400				
17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2B 1-3L	산업용지	5927.5	878,633	2011년 상반기	매입	한국수자원공사	
18	장천 오로리 824	학교용지	7,601	200	2011년 상반기	매입	교육청	감정가
19	장천 오로리 751-1	학교용지	733	20,965				
20	장천 오로리 751-3	학교용지	27	251				

2011년도 공유재산 취득재산 조서

▣ 건 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재산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목	수 량					
계	23동		55,194	16,362,148				
1	신평동 188	건물	6511.21	1,823,138	2011년 상반기	매입	기획재정부	假 감정
2	신평동 188	건물	4861.50	1,263,990				
3	신평동 188	건물	3868.90	1,005,914				
4	신평동 188	건물	791.83	142,529				
5	신평동 188	건물	8335.71	2,167,284				
6	신평동 188	건물	4115.43	1,646,172				
7	신평동 188	건물	900.99	270,297				
8	신평동 188	건물	2244.44	673,332				
9	신평동 188	건물	2335.43	817,400				
10	신평동 188	건물	2678.59	750,005				
11	신평동 188	건물	2678.58	750,002				
12	신평동 188	건물	4071.57	1,221,471				
13	신평동 188	건물	712.00	199,360				
14	신평동 188	건물	9987.48	3,495,618				
15	신평동 188	건물	48.12	14,436				
16	신평동 188	건물	6.00	1,800				
17	신평동 188	건물	21.00	4,200				
18	신평동 188	건물	56.40	14,664				
19	공단동111-6	건물	272.00	54,400				
20	장천 오로리 824	건물	431.00	27,034	2011년 상반기	매입	교육청	감정가
21	장천 오로리 824	건물	162.00	9,104				
22	장천 오로리 824	건물	64.00	8,028				
23	장천 오로리 824	건물	40.00	1,967				

2011년도 공유재산 취득재산 조서

▣ 기 타(공작물,수목등)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재산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유자	비 고
	소재지	지목	수 량					
계			296	606,170				
1	신평동 188	공작물	161점	454,258	2011년 상반기	매입	기획재정부	대장가격
2	신평동 188	입목죽	39종	143,832				
3	장천 오로리 824외	공작물	5점	527	2011년 상반기	매입	교육청	감정가
4	장천 오로리 824외	수목등	91종	7,553				

2011년도 공유재산(구미원예농단) 계약해제 재산조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 원)

연번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매각사유 (계약일)	소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64필지		127,687	3,344,201			
1	옥성면 구봉리 746-64	전	215	구미원예농단 농가분양 (2001.11.30)	구미시	2010.12. 1 매각해제(취소)	
2	옥성면 구봉리 746-83	전	141				
3	옥성면 옥관리 1108-71	전	762				
4	옥성면 옥관리 1108-79	전	87				
5	옥성면 옥관리 1108-81	전	18				
6	옥성면 옥관리 1109-1	전	107				
7	옥성면 옥관리 1110	전	163				
8	옥성면 옥관리 1110-2	전	23				
9	옥성면 옥관리 1111	전	230				
10	옥성면 옥관리 1111-1	전	125				
11	옥성면 옥관리 1111-2	전	91				
12	옥성면 옥관리 1111-3	전	50				
13	옥성면 옥관리 1113	전	324				
14	옥성면 옥관리 1115	전	119				
15	옥성면 옥관리 1118-1	전	220				
16	옥성면 옥관리 1118-3	전	1				
17	옥성면 옥관리 1112-1	전	269				
18	옥성면 옥관리 1114-1	전	245				
19	옥성면 옥관리 1116-1	전	306				
20	옥성면 옥관리 1117	전	192				
21	옥성면 옥관리 1108-17	전	263				
22	옥성면 옥관리 1108-20	전	308				
23	옥성면 옥관리 1108-60	전	2,919				
24	옥성면 옥관리 1-3	전	230				
25	옥성면 옥관리 2-4	전	594				
26	옥성면 옥관리 2-6	전	20				
27	옥성면 옥관리 3-1	전	1,173				
28	옥성면 옥관리 3-4	전	336				
29	옥성면 옥관리 3-5	전	1,661				
30	옥성면 옥관리 6-1	전	909				
31	옥성면 옥관리 6-6	전	61	누락추가			

2011년도 공유재산(구미원예농단) 매각해제 재산조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매각사유 (계약일)	소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32	옥성면 옥관리 6-7	전	319	구미원예농단 농가분양 (2011.11.30)	구미시	2010.12. 1 매각해제(취소)	
33	옥성면 옥관리 6-8	전	285				
34	옥성면 옥관리 7-1	전	1,430				
35	옥성면 옥관리 8-1	전	4,556				
36	옥성면 옥관리 8-12	전	3,836				
37	옥성면 옥관리 10	전	836				
38	옥성면 옥관리 11	전	686				
39	옥성면 옥관리 12-1	전	98				
40	옥성면 옥관리 85-3	전	1				
41	옥성면 옥관리 1108-6	전	1,233				
42	옥성면 옥관리 1108-9	전	6,460				
43	옥성면 옥관리 1108-11	전	156				
44	옥성면 옥관리 1108-15	전	13,912				
45	옥성면 옥관리 1108-21	전	3,675				
46	옥성면 옥관리 1108-29	전	1,796				
47	옥성면 옥관리 1108-30	전	1,057				
48	옥성면 옥관리 1108-36	전	395				
49	옥성면 옥관리 1108-37	전	1,279				
50	옥성면 옥관리 1108-83	전	4,829				
51	옥성면 옥관리 1108-84	전	22,922				
52	옥성면 옥관리 1108-99	전	8,191				
53	옥성면 옥관리 1108-100	전	342				
54	옥성면 옥관리 1108-101	전	161				
55	옥성면 구봉리 746-61	전	609				
56	옥성면 구봉리 746-62	전	1,946				
57	옥성면 구봉리 746-78	전	962				
58	옥성면 구봉리 746-79	전	6,136				
59	옥성면 구봉리 746-80	전	1,992				
60	옥성면 구봉리 746-81	전	864				
61	옥성면 구봉리 746-82	전	451				
62	옥성면 구봉리 746-92	전	10,867				
63	옥성면 구봉리 746-93	전	12,909				
64	옥성면 구봉리 746-94	전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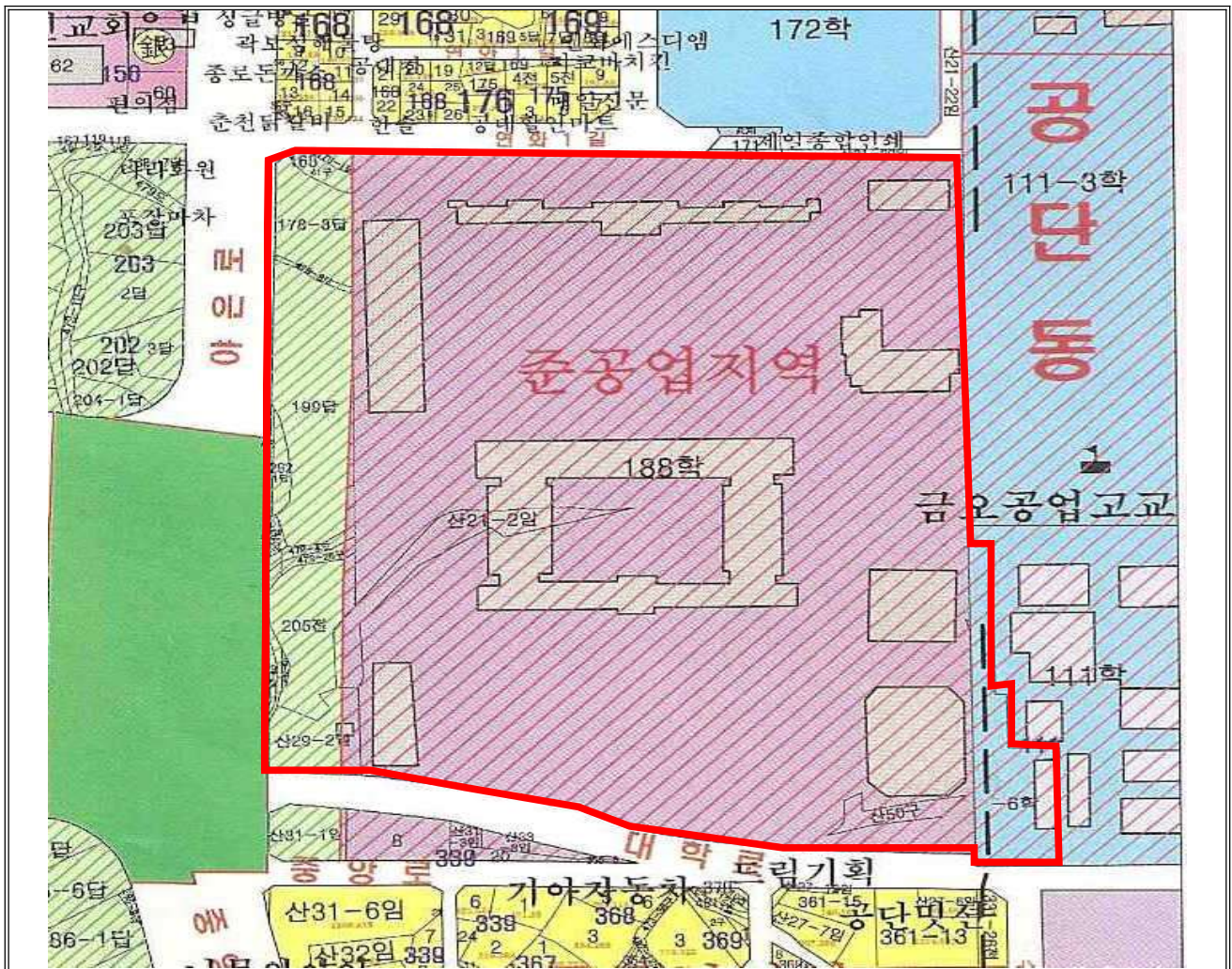
금오공대 구)캠퍼스 취득대상 물건 현황도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신평동 188번지 외 15필지(금오공대 구)캠퍼스)

○ 면적 : 토지 89,398m², 건물 54,497m²

□ 지적 및 현황도



외국인투자유치 부지 취득대상 물건 현황도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구미국가산업 제4단지 2B 1-3L

○ 지목 및 면적 : 산업용지 5,927.5m²(전체면적 11,855m²중 50%)

□ 현황도



장천초등학교 오로분교
취득대상 물건 현황도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장천면 오로리 824번지 외 2필지

○ 면적 : 토지 8,361㎡, 건물 697㎡

□ 현황도



구미원예농단 매각취소 물건 현황도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옥성면 구봉리 746-64번지 외 63필지

○ 면 적 : 토지 127,687m²

□ 현 황 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